

부천시의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안건은 조례로 정한 지방의회의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.
-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「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」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의 교부 조항이 앞서 설명한 대로 「지방재정법」에 위배된다고 판단, 해당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부천시 조례의 용어 등 표준화 규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음.

부천시의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33호
의결 년월일	2008. 3. 20 (제142회)

제안년월일 : 2008. 3. 10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제안이유

- 조례로 정한 지방의회의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(2002추16, 2004. 4. 23.) 및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정 개정권고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관련 규정을 삭제함.(안 제 4조 및 제6조)

개정 조례안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그 밖의 참고사항

- 개정권고 공문 사본: 붙임생략

부천시의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의회설치및육성조례”를 “부천시의회 설치 및 육성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 위 각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제4조로 하고, 제4조(종전의 제5조)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의회설치및육성조례</u></p> <p>제3조(사업)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<u>다음 각호</u>의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p> <p>제4조(보조금의 교부) 시장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<u>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운영규정)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<u>범위안</u>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6조(준용)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<u>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의회 설치 및 육성 조례</u></p> <p>제3조(사업) ----- -----<u>다음 각 호</u>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</u>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제4조(운영규정) ----- ----- -----<u>범위 안</u>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